

	<b>원격수업운영규정</b>	규정번호	3-4-25
		제정일자	2021.09.01.
		개정일자	2026.03.01.
		개정차수	5차
		소관부서	교무처 (원격교육지원센터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(이하 ‘대학’이라 한다) 학칙 제38조(교과이수단위), 제39조(수업 및 교수시간) 및 원격교육운영규정 제2조(정의)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원격수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① ‘원격수업’이란 고등교육법 제22조에 의한 방송·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말한다. 다만, 대면수업의 보조 수단(수업자료 탑재, 질의·응답, 토론 등)으로서 방송·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.

② ‘콘텐츠’는 교수자가 온라인교육 용도로 제작한 자료로 강의를 대체할 수 있는 동영상, 오디오 형태를 의미한다.

③ ‘원격교육 시스템 (LMS, Learning Management System)’은 온라인을 통해 교수-학습 활동을 관리하고 지원해주는 시스템을 의미한다.

제3조(위원회) ① 원격수업 콘텐츠의 질 관리와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·관리를 위하여 ‘원격교육관리위원회’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은 원격교육지원센터규정에 따른다.

1. 삭제 <2023.03.01.>

2. 삭제 <2023.03.01.>

3. 삭제 <2023.03.01.>

③ 삭제 <2023.03.01.>

④ 삭제 <2023.03.01.>

⑤ 삭제 <2023.03.01.>

제4조(교과목 개설) ① 원격수업 교과목은 매학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설한다.

② 삭제 <2022.09.01.>

③ 원격수업을 개설하고자 하는 교원은 [서식1]원격수업 콘텐츠 개설 신청서와 [서식2]원격수업 자가심사표(교수자)를 원격수업 콘텐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위원회는 [서식3]원격수업 콘텐츠 심사표에 따라 제출된 콘텐츠를 심사하여 개설기준을 통과한 경우에 한해 개설한다.

⑤ 교육과정상 현장실습교과목은 원격수업으로 개설할 수 없다.

⑥ 전임교원은 학기별로 책임시수의 50% 이내로 원격수업을 개설 할 수 있다. 다만, 50%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 개설 할 수 있다. <신설 2025.03.01.>

제5조(교과목 운영) ① 원격수업 교과목의 수업일수는 중간평가, 기말평가를 포함하여 학기당 15주차 이상으로 한다. 단, 계절학기 등의 수업일수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② 원격수업 교과목 콘텐츠는 학습목표, 학습내용 동영상 및 상호 학습활동을 포함하여 구성하며, 원격수업 인정시간 산정기준은 [별표 1] 및 [별표2]와 같다.

③ 원격수업 교과목 콘텐츠의 상호 학습활동은 반드시 대학의 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진행하며 온라인 상호작용 인정기준은 [별표2]와 같다.

④ 원격수업 교과목의 수강인원은 일반 교과목과 동일한 기준으로 하며 원격수업으로 진행하는 시간에 대한 교원의 시수인정 및 강사료 산정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

제6조(출석 및 평가방법) ① 원격수업의 출석은 1주차 학습기간으로 개강일로부터 1주일(7일) 단위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정된 기간 내에 수강하여야 출석으로 인정한다. 단 개강일의 연기, 학기 초 수강정정기간, 계절학기 수업 등 특별한 사유에 따라 수업 일정을 감안하여 학습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② 원격수업 교과목의 성적평가(중간, 기말 등)는 출석시험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교수학습방법과 교과목 특성에 따라 출석시험이 어렵거나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합할 경우 온라인으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.

③ 시험 실시 방법 및 학습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강의계획서에 포함되어 사전에 학생들에게 공지되어야 한다.

④ 원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평가 근거자료(출석, 시험, 과제) 등을 LMS 및 파일로 10년 보관하여야 한다. <신설 2026.03.01.>

제7조(콘텐츠 개발 및 지원) ① 학교는 원격수업을 위한 원활한 콘텐츠 개발 및 제작을 위해 시설, 기자재, 개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7조 1항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, 원격교육지원센터에서 정한 소정의 기간 내에 절차·방법·기간·과목명·콘텐츠의 종류 등을 명시한 콘텐츠 개발 신청서를 원격교육지원센터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수업콘텐츠는 영상 콘텐츠 단독으로 구성된 형태 및 영상 콘텐츠와 토론, 퀴즈, 과제물 등 온라인 상호작용이 혼합된 형태로 구성할 수 있으며, 그 기준은 [별표 1] 및 [별표 2]를 따라야 한다.

④ 콘텐츠는 담당교수가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, 필요에 따라 외부 수주에 의하여도 콘텐츠를 개발, 구매 및 임대할 수 있다.

⑤ 콘텐츠 개발·제작하는 경우 저작권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8조(원격수업 교과목의 질관리) ① 원격수업 교과목의 수업운영, 성적처리 및 강의평가는 일반 교과목과 동일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.

② 원격수업의 질관리를 위해 정기 또는 수시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.

③ 강의평가 결과가 저조하거나 강의 운영에 변경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지, 수정, 보완, 폐지 등을 결정한다.

제9조(원격수업의 관리 및 운영) ① 원격수업과 관련한 교과목의 개설, 폐지, 분반 등 학사운영 관리는 대학 학사관련 규정에 따르며 교무처에서 담당한다.

② 원격수업을 위한 웹사이트의 관리, 콘텐츠 관리, LMS 온라인 관리, 교수자의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은 원격교육지원센터에서 담당한다.

③ 원격수업 정보화 계획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원격교육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 및 설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전산정보원에서 지원한다.

제10조(저작권) ① 대학에서 지원받아 개발한 콘텐츠의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은 대학 소유로 한다.

② 원격수업 콘텐츠에 대해 저작권법을 준수하지 못하고 생긴 불이익은 담당 교수자가 책임을 진다.

③ 대학에서 개발 및 사용한 교안 및 콘텐츠를 제3자 또는 타 기관에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④ 상기에 기대된 내용을 위반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담당 교수자가 책임을 지며 책임범위에 대해서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1조(콘텐츠의 갱신·폐지) ① 원격수업 콘텐츠 최초 개설 이후 3년이 경과하기 전 담당교원은 원격수업 강의콘텐츠 갱신 또는 폐지 신청서 등을 제출하며 위원회는 신청 내용에 대한

심의를 거쳐 해당 콘텐츠의 갱신 혹은 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.

② 콘텐츠를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원격교육지원센터의 재개발 절차를 거쳐 1년씩 2회 연장 운영할 수 있다. <신설 2026.03.01.>

③ 원격교육지원센터는 콘텐츠 원본 갱신 및 폐지 결정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 <신설 2026.03.01.>

제12조(외부 콘텐츠 사용에 대한 기준) ① 외부 제작 및 타 플랫폼에 탑재된 외부 콘텐츠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.

② K-MOOC, 사이버대학교, 대학 간 학점교류 등 외부 콘텐츠를 활용한 학점 인정은 해당 법령에 따른 규정 또는 지침을 준용한다.

제13조(정보보호에 관한 사항) 원격수업의 교수자 및 학생 등의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「개인정보보호법」 및 ‘개인정보 처리방침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.

제14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#### 부 칙

① 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2021학년도 2학기 원격수업 운영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간주한다.

#### 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이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